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587
----------	-------

발의연월일 : 2025. 12. 24.

발의자 : 김소희 · 박정하 · 김기웅
김형동 · 최수진 · 엄태영
추경호 · 서일준 · 우재준
이양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는 규제의무 자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규제 위반에 따른 벌칙 규정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는 하지 않고 있음.

규제가 도입되거나 강화될 경우 벌칙이 함께 도입되거나 강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업규제와 관련하여 형사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많고 외국의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이 부과될 사안도 징역형까지 과하는 등 기업인에 대한 벌칙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처럼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처벌은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적극적인 투자와 경영을 방해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 성장을 저해하게 될 우려가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개혁위원회가 기업규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별칙 규정의 타당성에 대해서 심사하지 않는 것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운영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 위반에 따른 별칙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도록 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별칙이 도입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법률 제 호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규제를”을 “규제 또는 규제 위반에 따른 벌칙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심사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u>규제를</u>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안(法令案)에 대하여는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10조(심사 요청) ① ----- -----<u>규제 또는 규제 위반</u> <u>에 따른 벌칙을</u>----- ----- -----.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